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박성재)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 성 재

직 위 :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사유

I.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피소추자는 법무부장관으로 2024. 2. 20.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법무부장관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법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선포문 서명 여부 및 법무부의 법률검토 여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내란행위의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이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둘째,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법무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이후 체포할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소추자가 내란행위의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피소추자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통해, 제22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해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위헌적 비상계엄과 같은 초법적 조치를 염두에 둔 국회 경시 태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태도이다.

II. 법무부장관 탄핵 관련 헌법 및 법률 조항

국회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피소추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

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Ⅲ. 법무부장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검찰의 최고 책임자이다(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또한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같은법 제32조 제2항),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특히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8조)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

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3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자 법무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참모로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책임이 있다.

IV.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배

1. 내란행위

가. 형법상 내란죄 공범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

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구체화하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포고령(제1호)은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 (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분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장갑차가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군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관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해야 하는 서울청 소속 6기동단 소속의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수 많은 시민들과 대치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국회 의원총회를 국회 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국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하는 가운데 2024. 12. 4. 01:00경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였다. 결국 피소추자는 대통령 및 다른 국무위원 등과 공모

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범하였다.

나. 내란죄 가담행위

(1) 국무회의 참석, 의결

피소추인은 2024. 12. 3.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결정에 관여하였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24. 12. 3. 21:00시경 국무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참석대상 2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있어 대통령은 ‘계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피소추인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나 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위 내용에 동조했다고 할 것이다.

가사 명시적 찬성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을 도왔다.

(2)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피소추인은 전항의 계엄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

기 위해 2024. 12. 4. 01:00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내란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3) 대통령 안가 회동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어 내란이 일응 실패한 이후인 2024. 12. 4. 밤 피소추인은 서울 삼성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완규 법체처장 등과 비밀회동을 하였다. 위 회동참석자들은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공범들의 비밀회동으로서 제2의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4) 소결

이와 같이 살펴보건데 피소추자는 내란행위의 모의에 해당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일련의 내란행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법무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이후 체포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들의 구치장소를 확보하려고 하였고, 이는 내란죄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부화수행’(附和隨行)에 해당하며(형법 제87조, 제91

조), 또한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헌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들로 비추어보아 내란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사실관계

피소추자는 법무부를 책임지는 장으로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에 대한 제출을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국회에 출석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① 피소추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의 핵심 사건이 된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

록 자료 요구’에 대해 2024. 8. 23.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외에 또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본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구치소로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장 역시 법무부장관의 발언의 영향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언론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던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이 나오며 피소추자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했던 거짓말이 확인됐다.

② 피소추자는 제22대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 자료제출요구의 법적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제적 한계를 법무부 자체적으로 분석했고 그 보고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하며 본인들이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미답변 행태를 합리화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③ 피소추자는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기밀자료'라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태는 제22대 국회를 해산해야 할 '범죄 소굴'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비상계엄과 같은 초법적 조치를 염두에 둔 국회 경시 태도이자 국회의 역할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태도이다.

(2) 평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

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소추인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이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나. 헌법 및 법률 위반

(1) 사실관계

2024. 12. 7. 피소추자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여 질타를 받았다. 이날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하여 관련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사실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 평가

피소추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대한 요구를 설명하고 본회의 해당 안건이 처리될때까지 제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및 국민에게 그 어떠한 양해도 없이 무단으로 퇴거하였다.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피소추인은 설명을 끝내자마자 안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단으로 본회의장을 퇴거한 것은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다(헌법 제62조 제2항).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V.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중대성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의 기소 여부를 담당하는 검찰청에 대하여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 및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헌법질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SBS, 2024. 12. 3.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2. 한겨레, 2024. 12. 4.자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국회에 계엄군 진입 시작> 제하 기사
3. 한겨레, 2024. 12. 4.자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제하 기사
4. 한국일보, 2024. 12. 9.자,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총리·장관들…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제하 기사
5. 프레시안, 2024. 12. 9.자, <경찰청장 “계엄때 방첩사, 이재명·김명수·권순일 등 위치추적 요청”>, 제하 기사
6. 연합뉴스, 2024. 12. 6.자, <법무·행안·법제처장, 계엄 해제한 날 ‘안가 회동’ 논란> 제하 기사
7. JTBC, 2024. 12. 6.자,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제하 기사
8. 한국일보, 2024. 12. 8.자, <야당 의원 노려보고 퇴장한 박성재…“이런 장관 처음” 못매> 제하 기사
9. 아시아경제, 2024. 12. 6.자, <박성재 법무장관도 ‘계엄 국무회의’ 참석…찬·반 여부는 함구> 제하 기사

10. 2024. 8. 23 제22대국회 제417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1. 2024. 9. 25 제22대국회 제418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2. 2024. 10. 8 제22대국회 제418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3. 2024. 10. 25 제22대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4. 법무부 자료 제출요구 관련
15. 서울경제, 2024. 12. 5.자, <사과 없는 尹의 침묵... '계엄 정당성' 고수?>